

< 정 오 표 >

1. 정정대상 투자신탁 : 유리글로벌거래소연금지축증권투자신탁(주식)

2. 효력발생예정일(변경시행일) : 2018.01.23

3. 주요 정정사항

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(매매이익 및 평가이익 유보)
- 부책임용인력 삭제
- 모펀드 변경사항 반영
- 법 개정사항 반영

[규약]

항 목	변경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	법 개정사항 반영	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2호, 제19조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	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2호, 제19조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
제33조(이익 분배)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수익증권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 1.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 ② (생략) <신설>	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<단서 삭제> <삭제> ② (현행과 동일)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'0'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1.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.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
부 칙	-	-	부칙(2) 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8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[일괄신고서/투자설명서]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			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		
[1] 투자전략			
4. 운용전문인력	부책임 력 삭제 운용인	부책임운용인력 : 박상건	<삭제>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변경에 따른 연혁 추가	-	2018.01.23 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(매매이익 및 평가이익 유보) - 부책임운용인력 삭제 - 모펀드 변경사항 반영 - 법 개정사항 반영
5. 운용전문인력	부책임 력 삭제 운용인	가. 운용전문인력 부책임운용인력 : 박상건 나.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부책임운용인력 : 박상건(2016.10.12~현재)	가. 운용전문인력 <삭제> 나.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부책임운용인력 : 박상건(2016.10.12~2018.01.22)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	모 펀드 변경사항 반영	[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] (6) 집합투자증권 다만,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.	[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] (6) 집합투자증권 다만, 법 제234조에 따른 <u>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(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)</u> 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.
나. 투자제한	법 개정사항 반영 및 모 펀드 변경사항 반영	[투자한도 및 제한의 예외]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2호, 제19조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. [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] (2) 동일종목 투자 나. 자산총액의 30%까지 : <전략>,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·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및 <u>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</u> (7) 투자한도 초과	[투자한도 및 제한의 예외]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2호, 제19조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<u>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</u>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. [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] (2) 동일종목 투자 나. 자산총액의 30%까지 : <현행유지>,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·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및 <u>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(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)</u> 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 (7) 투자한도 초과

		<p>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5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9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, 금융투자업규정 제4-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규약 제19조제8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합니다.</p>	<p>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5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9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, 금융투자업규정 제4-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규약 제19조제8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합니다.</p>
<p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. 이익 배분</p>		<p>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. 다만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.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. <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> 2017년 1월 19일 이후 매년 결산·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(다만,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·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·분배되어 과세됩니다).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
<p>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p>			
<p>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</p>	<p>법 개정사항 반영</p>	<p>라. 손해배상책임 ③ 증권신고서 -- 않습니다. -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(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</p>	<p>라. 손해배상책임 ③ 증권신고서 -- 않습니다. -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(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35조 제2항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)</p>

		<u>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인</u>	
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